

상 표 법 시 행 령  
전 부 개 정 령 (안 )

2016. 4.

특 허 청

상 표 심 사 정 책 과

##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가지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포장의 구성방식에 따른 유형 규정 신설(안 제2조)

상표법상 포장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1조)

상표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상표검색과 상품분류 외에도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상표  
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으로 확대함

다. 등록상표에 관한 게재사항 신설(안 제16조)

상표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공고를 상표  
공보에 게재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  
자에 대한 정보 등 등록상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고할 수 있는 세  
부사항을 신설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상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장의 구분 등) ①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의 “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4.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

② “시각적 표현”이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문자·숫자·

기호·도형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4.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제4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

제5조(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
3.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제7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6조 제5항 및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
4.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한정한다)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①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른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증명표장권을 이전 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 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

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상품명 및 상품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3.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4. 상표분류
5. 상품의 거래실태에 관한 조사
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7.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구축
8.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에 관한 조사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을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해당 경고와 관련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한정한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상표등록출원인이 타인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경고를 한 경우 해당 경고와 관련이 있는 상표등록출원
5. 타인의 먼저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인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6. 법 제167조제1호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7.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외국 특허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한정한다)

8.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동일인이고, 포장 및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경우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심판관의 자격)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5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상표공보) ① 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는 등록상표공보와 출원공고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표장(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전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
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
7. 조약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8.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에 한정한다)
9. 시각적 표현(제2조제3호를 포함하는 상표에 한정한다)
10. 소리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1.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한정한다)
13.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법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한정한다)
14.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57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표장(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전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와 출원공고일
  6. 조약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에 한정한다)
  8. 시각적 표현(제2조제3호를 포함하는 상표에 한정한다)
  9. 소리상표인 경우에는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0.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대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한정한다)
  12.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법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한정한다)
  13.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
  14. 법 제59조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

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특허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법 제237조 제1항제1호	12.5	25	50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7조 제1항제2호	12.5	25	50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	법 제237조 제1항제3호	5	10	20

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 을 거부한 경우				
---------------------------------	--	--	--	--